

비상경제장관회의

23-22-2

(공개)

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

2023. 10. 5.

관계부처 합동

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(요약)

I 추진경과

-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
 - 그간 8차례의 경제 규제혁신TF 개최를 통해 215개 개선과제¹⁾와 8개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²⁾ 발표 및 기업 투자애로 해소³⁾로 총 15.8조원 규모 투자 지원
 - 1) 오창 이차전지 공장·R&D센터 증설 지원,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산단 부지 공급 수의계약 허용,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등
 - 2) 순환경제, 중소벤처, 철도, 외환, 조달, 건설, 국가계약, 화학물질
 - 3)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, LNG저장탱크 및 이차전지 공장 건설 지원 등
- 금번에는 첨단전략산업, 모빌리티 등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15건의 규제 개선과제 우선 발표

II 주요 특징

- ①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
 -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기준 마련, 환경 관련 허가·설비관리 의무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투자 지원
- ②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
 -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시스템을 고도화하고, 신기술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
- ③ 환경·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
 - 화학물질 관련 등록 기준 합리화, 이중 제재 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

Ⅲ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

◇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, 모빌리티 산업, 환경·화학물질 등 분야의 기업현장 규제·애로 총 15건 개선

1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

①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별도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* 신설을 통해 이차전지 기업의 신속한 투자 및 비용 경감 지원

* 벽·기둥·바닥 등 주요 구조부, 사용가능한 유리의 종류,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,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 (아래 표)

※ 반도체 산업도 공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특례 신설중('23.8월 입법예고)

【 이차전지 제조 공정(실)의 설치기준(안) 】

	일반취급소 일반기준	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
주요 구조부 (벽·기둥·바닥 등)	내화구조로 하되, 구획벽은 두께 70mm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	내화구조
창 가부 (유리 종류)	설치 금지	설치 허용 (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)
경사 여부	경사를 둘 것	누출 위험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한 경우 경사 면제
배관 재질	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	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 또는 PTFE

② 반도체 스크러버*를 반응시설로 분류하여 온도계의 설치·관리 등 과도한 설비 유지·보수로 인한 부담 경감**

* 반도체 공정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 → 소각시설로 분류시 온도계 부착 의무 有 / 반응시설로 분류시 無

** 반도체 공장 사업장당 수백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

③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·신고 절차를 간소화*하여 생산장비 설치·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행정부담 완화

* (예)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연말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 도입

④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공사시,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을 허용

* 현재는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의무

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

- 1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*을 통해 모빌리티 관련 혁신 기술·서비스**에 대한 신속한 검증 및 조속한 상용화 지원

* 현재 6개 규제샌드박스(ICT, 산업, 금융 등) 운영중 →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 1개 추가

** (예) 자율주행 심야셔틀·배송로봇·청소차, 주차로봇,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

- 2 실증사업 등을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산 및 미래융복합 주유소 전환 가속화

- 3 상이한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*,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** 개선을 통해 전기차 제작업체 애로 해소

* (現)(연비통합고사)최고속도의 65~75% 주행↔(환경부고사)105km/h → (改)환경부고사로 통일

** 저온 환경(-6.7°C)에서 히터온도 최대(실내온도 39°C까지 상승), 팬속도 최대 등 극단적 조건

3 환경·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

- 1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*을 마련하여 등록비용 부담 절감

* EU와 같이 재활용 또는 회수물질이 등록 완료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, 등록면제 인정

- 2 녹색기업*에 대해 「환경오염시설텍」 상 각종 오염물질 관련 보고·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친환경 기술확산 등 지원

* 오염물질 감소, 자원·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(환경부 지정)

- 3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과 차년도 총량삭감의 이중부담을 완화*

* (예) 배출허용총량 삭감비율 하향 조정 등

IV 향후 계획

- 금번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
-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다른 분야의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 노력 지속

순서

I. 추진 경과	1
II. 주요 특징	2
III.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	3
IV. 향후계획	11

I. 추진 경과

- 정부는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 및 경제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
- 민간 주도의 「경제 규제혁신 TF」를 운영('22.6월~), 그간 8차례 회의를 통해 215개 개선과제*와 8개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** 발표
 - * 오창 이차전지 공장·R&D센터 증설 지원, 지자체 입주협약 기업에 산단 부지 공급 수의계약 허용,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등
 - ** 순환경제, 중소벤처, 철도, 외환, 조달, 건설, 국가계약, 화학물질
- 특히,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, LNG 저장탱크 및 이차전지 공장 건설 지원 등 기업 투자프로젝트 애로 해소로 총 15.8조원 규모 투자 지원

[기업 투자프로젝트 지원 주요 사례]

애로 해소 주요 내용	투자 효과
① 충북 오송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	4조원 + α
②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	1.3조원
③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무공해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배터리 교환시설 투자 기반 마련	4,100억원
④ 항만기본계획의 적기 변경을 통한 광양 LNG 저장탱크 설치	8,500억원
⑤ 위험물 취급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오창 이차전지 공장의 정상 건설 지원	5,800억원
⑥ 주유소 내 수소연료전지 설치 허용	4,000억원
⑦ 조선소 등의 협동로봇 안전성 기준 개선	3,200억원

- 직전 기업 수출·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발표(8.17일) 이후 업종별 간담회, 경제 협·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제개선 과제 발굴 → 신속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진행
- 첨단전략산업, 모빌리티 등 분야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15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표

II. 주요 특징

1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

○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·금융지원 등 전방위적 지원 노력을 경주 중이나,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괄적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

⇒ 산업 특수성을 감안한 안전기준 등 마련*, 환경 관련 허가·설비 설치 의무 완화 등을 통해 기업부담 경감 및 신속한 투자 지원

* (예) 이차전지 산업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특례 신설, 국가첨단 전략기술 관련 소방공사 분리도급 의무 예외 인정

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

○ 자율주행, 전기·수소차 등 모빌리티 분야 기술 개발*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나, 신기술에 대한 기준 부재 등으로 혁신이 지체

* (예) 자율주행 심야셔틀·배송로봇·청소, 주차로봇, 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 등

⇒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시스템을 고도화*하고, 신기술 기반 전기·수소차 충전** 인프라 확산을 지원하는 등 혁신 생태계 조성

* 모빌리티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 신설 → 모빌리티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한 검증 및 상용화 지원

**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, 액화수소 직접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마련

3 환경·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

○ 환경·화학물질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 혁신에도 불구하고, 획일적 규제, 이중 제재, 빈번한 보고·검사 등 관련 기업부담 완화 요청 지속

⇒ 화학물질 관련 등록 기준 합리화, 이중 제재 부담 완화 등으로 기업의 경영상 애로사항 해소

Ⅲ. 분야별 규제혁신 과제

◇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, 모빌리티 산업, 환경·화학물질 등 분야의 기업현장 규제·애로 총 15건 개선

1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

① 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 합리화

- (현황) 위험물을 취급하는 이차전지 제조공장 건설시 일반취급소*에 대한 일반 안전기준 적용 →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준 준수 과정에서 건설 지연 및 비용 증대

* 위험물 취급소 중 주유·판매·이송 취급소를 제외한 취급소

※ 반도체 산업은 공정 특수성을 반영하여 안전기준 특례 신설중('23.8월 입법예고)

- (개선) 이차전지 제조공장에 특화된 위험물 일반취급소 안전기준* 특례 신설

* 벽·기둥·바닥 등 주요 구조부, 사용가능한 유리의 종류, 건축물 바닥의 경사도, 위험물 배관의 재질 등 (아래 표)

【 이차전지 제조 공정(실)의 설치기준(안) 】

	일반취급소 일반기준	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
주요 구조부 (벽·기둥·바닥 등)	내화구조로 하되, 구획벽은 두께 70mm 이상 철근콘크리트 구조	내화구조
창 가부 (유리 종류)	설치 금지	설치 허용 (망입유리 또는 방화유리)
경사 여부	경사를 둘 것	누출 위험물의 유출방지 조치를 한 경우 경사 면제
배관 재질	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	금속성 또는 폴리우레탄 등 또는 PTFE

【조치사항】 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('23.10월 입법예고후 '24.1분기 개정)

2 반도체 업종 스크리버 온도계 부착 의무 면제

- (현황) 반도체 업종의 스크리버*의 소각시설/반응시설** 기준이 불명확 → 일부사업장에서 소각시설로 보아 온도계 부착 의무 이행중
 - * 반도체 공정장비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
 - ** 소각시설은 온도계 부착 의무 有, 반응시설은 無
- 온도계 설치 비용(사업장당 최대 수백대), 고온(1500℃ 이상) 및 처리 부산물(불화수소)로 인한 온도계 부식 등으로 유지·보수에 애로
- (개선) 스크리버를 반응시설로 분류하는 등 기준 명확화

[조치사항]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해석 명확화('23.10월, 즉시조치)

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·신고 기준 완화

- (현황)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* 대상 물질(먼지, NO_x, SO_x) 배출시설을 증설 또는 폐쇄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의무
 - * 대기오염이 심각한 권역·지역을 지정, 사업장별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관리
- 경미한 변경시에도 변경허가 및 신고가 요구되어, 생산장비 설치·폐쇄가 많은 반도체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 행정부담 가중
- (개선)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배출시설 변경허가·신고 절차 간소화 추진
 - * (예) 경미한 변경의 경우 연말에 한번에 신고할 수 있는 방안 등 도입

[조치사항] 연구용역('23년내 착수) 결과를 토대로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8월)

4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 예외 인정

- (현황)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하여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 발생
- (개선)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시 소방공사 분리 도급 의무의 예외 인정

[조치사항] 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('23.10월 입법예고 후 '24.上 개정)

2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

1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

- (현황) 新이동수단의 등장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하고, 모빌리티 분야의 민간 주도 혁신 성장을 촉진할 필요성 증가
※ 규제샌드박스 승인 918건 중 모빌리티 분야는 148건으로 16.1% 차지('23.7월)
- 기존 규제샌드박스 분야(산업융합, ICT 융합 등)에서 모빌리티 법·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전문성 강화 필요
- (개선)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*하여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·서비스 및 기술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검토 추진
*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3.4.18.)·시행('23.10.19.)
※ 현재 6개 규제샌드박스(CT, 산업, 금융 등) 운영중 → 모빌리티 특화 샌드박스 1개 추가

<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대상 >

구 분	내 용
모빌리티 수단	·자전거·자동차·열차·항공기 및 선박 ·보행(步行) 등 비동력 교통수단 ·자율주행자동차,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
모빌리티 기반시설	·도로·철도·공항·항만·터미널 등의 시설 및 보조시설 또는 공작물 ·첨단기술이 접목된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·위 시설에 부속되거나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을 보조하는 유·무형 시스템
모빌리티 서비스	·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을 이용해 사람·물건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해 모빌리티 수단·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

[조치사항] 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하위법령 시행('23.10.19.)

별첨

모빌리티 실증특례사업 예시

연번	사업명	내용
1	<p>자율주행 심야셔틀/택시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유형) 모빌리티 수단 개발형/서비스형 ▶ (사업내용) 자율주행차량을 활용한 심야시간대 노선버스 또는 택시 서비스
2	<p>주차로봇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유형) 모빌리티 서비스형 ▶ (사업내용) 파렛트 이동방식 또는 나르카를 활용한 주차로봇 서비스
3	<p>공동주택 입주자 공유 플랫폼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유형) 모빌리티 서비스형 ▶ (사업내용) 입주초기 신도시, 산간오지 등 초소형 차량 등 공유차량 서비스
4	<p>수륙양용형 여객서비스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유형) 모빌리티 수단 개발형/융합형 ▶ (사업내용) 수상 및 육상 주행이 모두 가능한 버스, 택시 등 여객운송 서비스
5	<p>자율주행 청소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유형) 모빌리티 복합서비스형 ▶ (사업내용) 자율주행차량 등을 활용한 거리, 쇼핑몰 등 청소 서비스 제공
6	<p>자율주행 공유숙박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(유형) 모빌리티 복합서비스형 ▶ (사업내용) 자율주행차량 등을 활용한 운송, 숙박, 관광, 영화 등 복합 서비스 제공

2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 마련

- (현황)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* 설치를 위한 기준 부재
→ 전기차 고속 무선충전 인프라 확산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** 활성화 제약
 - * 운전자의 설비 조작없이, 주차면에 매립된 충전설비를 통해 주정차시 자동 충전
→ 전기차 무선충전 인프라 확산, 운전자의 편의성·안전성 및 자율주행 활용성 제고
 - ** 주유소에 연료전지·태양광 등 분산전원 발전설비를 함께 설치하여 전기차 충전 수요에 활용하는 미래융복합 주유소
- (개선)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특례를 통해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 검증·마련

[조치사항] 실증특례 관련 부처협의('23년내) 후 실증특례 실시→설치기준 마련('24년)

3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

- (현황) 전기차 에너지 소비효율과 대기배출물질·소음 측정을 위한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법이 상이*하여 이를 일원화할 필요
 - * 산업·환경·국토부 공동고시(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·온실가스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): 최대속도의 65~75%로 주행하여 배터리 방전
환경부 고시(제작차 시험검사 및 절차 규정): 105km/h 정속 주행으로 배터리 방전
- 현행 공동고시에 따르면 테스트시 고성능 전기차는 초고속 (200km/h 이상) 주행해야 하므로 안전문제가 우려
- (개선)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(산업·환경·국토, ~'23년)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기준 개선안* 마련
 - * (예) 환경부 고시상 테스트 기준(105km/h) 병행 적용

[조치사항] 관련부처간 협의('23년내)를 거친 후 「연비통합고시」 개정(~'24.上)

4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

- (현황)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측정시 극단적인 조건*으로 측정하여 실제 저온 주행거리와 격차 발생 → 소비자 혼선 우려
 - *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 시험조건(환경부)에 따르면 저온환경(-6.7°C)에서 히터 온도 최대(실내온도 39°C까지 상승)·팬속도 최대로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행
 - 또한, 자동차 업체별로 히터 성능이 상이(최대 온도값 상이)하여 일부 전기차의 저온 주행거리는 상온 주행거리와 큰 차이 발생
- (개선) 연구용역('23.6~'24.2월), 해외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안 마련

[조치사항] 연구용역('23.6~'24.2월) 결과를 토대로 「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」 개정('24년)

5 액화수소 자동차 및 선박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

- (현황) 국내 기업들은 자동차와 선박에 액화수소를 기화시키지 않고 직접 충전하는 충전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안전기준 부재
 - * 현행 액화수소 충전소는 충전소에 저장된 액화수소를 기화·압축하여 기체수소 상태로 차량 및 선박에 충전하는 방식
- (개선) 실증*을 통해 ①액화수소를 직접 상용차의 연료탱크에 주입하는 충전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
 - * (규제샌드박스) 액화수소 차량용 용기 개발 및 충전·주행 실증('23~'25년)
 - 실증*을 통해 ②선박용 액화수소 연료탱크의 제조 및 충전 시스템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
 - * (규제특구) 액화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작 및 운항 실증('22~'25년, 강원)

[조치사항] 실증('23~'25년) 후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가스기술기준 개정('25년)

6 도심형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

- (현황) 수소차충전소는 주택 등과 안전거리(12~32m) 확보 의무
→ 도심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충전소 보급 확대에 어려움
- (개선) 방호벽 및 추가 안전장치* 설치시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

* 긴급차단장치 2중설치, 압력방출설비, 가스온도상승방지 장치 등

[조치사항]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가스기술기준 개정('23년)

3 환경·화학물질 등 분야 기업부담 완화

1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

- (현행) 폐기물 추출·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에도 등록 필요
- (개선) 재활용 화학물질이 기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* 마련

* EU와 같이 재활용 또는 회수물질이 등록 완료된 물질과 동일한 경우 등록면제 인정

[조치사항] 「화학물질 등록평가법」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(~24.上)

2 녹색기업에 대한 보고·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

- (현황) 녹색기업*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「대기환경보전법」, 「물환경보전법」 등에 따른 보고·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중 이나, 「환경오염시설법」 상 보고·검사 의무 면제 인센티브는 부재

*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,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, 제품의 환경성 개선, 녹색 경영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

- (개선) 통합환경관리제도*상 통합허가 이후 1~3년 내 수행하는 정기보고·검사 등 「환경오염시설법」 상 각종 보고·검사 의무도 면제

* 환경영향이 큰 업종의 대규모 배출 사업장에 대해 기존 오염매체(대기·수질·토양 등)별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(17년~, 환경오염시설법 시행)

[조치사항] 「환경기술산업법」 국회 통과 추진(현재 국회 계류중)

3 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이중 제재 부담 완화

- (현황) 대기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과징금 부과, 차년도 배출허용총량 삭감 등 이중 제재 부담
- (개선)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총량삭감 비율 하향조정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

[조치사항] 연구용역('23년내 착수) 결과를 토대로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」 개정(~'24.8월)

4 차량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

- (현황) 사업용 자동차* · 자기 소유 자동차의 광고물 표시 부위가 옆면 · 뒷면으로 제한적
- * 버스, 택시 등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,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, 음식 판매 자동차
- (개선) 광고면을 '창문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각 면'으로 확대

<차량 종류별 광고 가능 표시 부위, 면적, 내용>

차량 종류	표시 부위			표시 내용	표시 면적
	창문	차체			
		현행	개정		
사업용 자동차	불가	옆면, 뒷면	제한없음	자사광고, 타사광고	표시 부위의 1/2
자기소유 자동차	불가	옆면	제한없음	자사광고	표시 부위의 1/2

[조치사항] 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 개정(~'23)

5 주유소내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 안전성 검증

- (현황) 기존 주유소를 친환경차 충전, 연료전지·태양광발전 등을 제공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 추진 중 →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가 필요하나 현재 주유소 내 ESS 설치 불가
- (개선) ESS 자체의 화재 위험성 및 주유소 내 ESS 설치 안전성 등에 대한 검증*을 거친 후, 실증특례 추진

* 학계, 산업계, 관계부처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객관적 검증 추진

※ 주유소내 연료전지 설치 사례('23.6월)와 같이 사고사례 분석·위험성 분석, 시뮬레이션 검증 등 다각도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실시

[조치사항]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('23년~)하는 대로 ESS 안전성 검증 착수 후 검증 결과를 토대로 실증특례 추진

IV. 향후 계획

- 금번 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여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
- 중소기업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연내 마련하는 등 다른 분야의 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·개선 노력 지속

참고 1

과제별 추진 계획

번호	정책과제	일정	부처
1-1	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시설 안전기준 합리화 (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)	'23.10월	소방청
1-2	반도체 업종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제외 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해석 명확화)	즉시조치	환경부
1-3	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·신고기준 완화 (연구용역('23년내) 후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」 개정)	'24.8월	환경부
1-4	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소방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인정 (「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」 개정)	'24. 上	소방청
2-1	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 (「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)	'23.10월	국토부
2-2	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 마련 (부처협의('23년내) 후 실증특례 실시→「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)	'24년	소방청
2-3	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 (관련부처간 협의('23년내) 후 「연비통합고시」 개정)	'24년	산업부 국토부 환경부
2-4	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 (연구용역(~'24.2월) 후 「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」 개정)	'24년	환경부
2-5	액화수소 자동차 및 선박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 (실증('23~'25) 후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가스기술기준 개정)	'25년	산업부
2-6	도심형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 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 및 가스기술기준 개정)	'23년	산업부
3-1	폐기물 재활용 물질의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 (「화학물질 등록평가법」 관련 하위법령 개정)	'24. 上	환경부
3-2	녹색기업에 대한 보고·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 (「환경기술산업법」 국회 통과 추진)	진행중	환경부
3-3	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이중 제재 부담 완화 (연구용역('23년내) 후 「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」 개정)	'24.8월	환경부
3-4	차량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 (「옥외광고물법 시행령」 개정)	'23년	행안부
3-5	주유소내 에너지저장장치(ESS) 설치 안전성 검증 (실증특례 신청즉시 안전성 검증 착수 후 실증특례 추진)	'23년~	소방청

참고 2

과제별 부처 담당자

과제명	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1-1	이차전지 제조공정에 특화된 위험물시설 안전기준 합리화	소방청 위험물안전과	박진수 과장 044-205-7490	서갑규 소방령 044-205-7481
1-2	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·신고기준 완화	환경부 대기관리과	박정철 과장 044-201-6900	이정민 사무관 044-201-6902
1-3	반도체 업종 스크러버 온도계 부착 의무 면제	환경부 대기관리과	박정철 과장 044-201-6900	서혜인 사무관 044-201-6911
		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	맹학균 과장 044-201-6715	홍성철 사무관 044-201-6718
1-4	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소방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인정	소방청 소방산업과	김재홍 과장 044-205-7500	안경섭 소방위 044-205-7507
2-1	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	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	심지영 과장 044-201-3835	하보윤 사무관 044-201-3818
2-2	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기준 마련	소방청 위험물안전과	박진수 과장 044-205-7490	김수희 소방령 044-205-7484
2-3	전기차 배터리 방전 테스트 방식 일원화	산업부 에너지효율과	김현철 과장 044-203-5140	박정진 사무관 044-203-5149
		국토부 자동차정책과	김은정 과장 044-201-3817	홍예표 사무관 044-201-3846
	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류필무 과장 044-201-6880	이정준 서기관 044-201-6946
2-4	전기차 저온 주행거리 시험 측정방법 개선	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	류필무 과장 044-201-6880	이정준 서기관 044-201-6946
2-5	액화수소 자동차 및 선박 충전시스템 안전기준 개발	산업부 에너지안전과	황윤길 과장 044-203-3980	박경민 사무관 044-203-3985
2-6	도심형 수소차 충전소 안전거리 완화	산업부 에너지안전과	황윤길 과장 044-203-3980	박경민 사무관 044-203-3985

과제명		부처명	담당과장	담 당
3-1	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화평법 등록 부담 완화	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	마재정 과장 044-201-6770	이주현 수석전문관 044-201-6783
3-2	대기배출허용총량 초과배출 기업에 대한 중복 제재 부담 완화	환경부 대기관리과	박정철 과장 044-201-6900	이정민 사무관 044-201-6902
3-3	녹색기업에 대한 보고·검사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 확대	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	서영태 과장 044-201-6678	최병관 사무관 044-203-4258
3-4	차량 이용 광고물 표시면적 확대	행안부 주소생활공간과	송정아 과장 044-205-3551	도은비 사무관 044-205-3544
3-5	주유소내 ESS 설치 안전성 검증	소방청 위험물안전과	박진수 과장 044-205-7490	권오상 사무관 044-205-7487